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0

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오영환·김남국·양정숙

이정문 · 최혜영 · 이상직

이탄희 · 이재정 · 신현영

김홍걸 · 정청래 · 홍정민

김민철 • 권인숙 • 임호선

전혜숙 · 양향자 · 임종성

강득구 · 임오경 · 장경태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·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·도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보수·보강 또는 설치에 필요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	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시・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
	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
	대해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
	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시·도의
	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
	설 등의 보수·보강 또는 설치에
	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
	<u>다</u> .